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432.4	(전화번호 465)	전결규정	조	호
				전결사항	
처리기한	2569	기안자	결	제	자
시행일자	67. 12. 21	구획정리과	시	장	
보존년한	30년	기안일자	결	제	일 자
		67. 12. 15	67. 12. .		
보	제 2 부시장				
조	도시계획국장				
기	구획정리과장				
판	계획계장				
협	조	경지계장 강도계획계장 종합계획계장 경지계장 행정계장	기획과장 시무과장 행정과장	건축과장 동무과장	법무과장 기획관리과장 네무과장
경	유		통	발	정
수	신		제	송	서
참	조	각 안 참 조			과대장정리
제	목	서울 도시계획 경인, 도농, 시농, 기포, 영농 도시구획정리 사업			
		계획공고			
제 1 안	내부결재				
1967. 11. 25 (건설부 공고 제 146호) 1967. 12. 21 (건설부 공고 15호) 1967. 12. 15 (건설부 공고 제 154호)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특별시장에게 시행명령된 경인, 도농, 시농, 기포, 영농 도시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 구획정리 사업법 제 32조 제 33조 규정에 따라 이 법안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0006

1967. 11. 23(건설부 공고 제 146호) 1967. 12. 21(건설부 공고 제 154호) 1967. 12. 15(건설부 공고 제 154호)로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할것을 명령한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비용 부담 방법과 토지 처분 방법 및 기타 정리상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하기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농 지구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총합에 공 합니다.

1967. 12. 21

서울특별시장

기

1. 사업 계획 별책 사업 계획서의 각음.
2. 비용 부담 방법 별도 부담금 징수 조례 해 정하는 바에 의함.
3. 토지 처분 방법 및 기타 구획정리상 필요한 방법 별도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등 토지구획정리지 구 시행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함.
4. 사업 지구 위치
 - 가. 경인지구 영등포구 북동, 신월동 신정동 회곡동, 각 일부 200만평
 - 나. 도봉지구 성곡구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창동 각 일부 120만평
 - 다. 시흥지구 영등포구 시흥동, 독산동, 가리봉동, 신안양리 1부 150만평
 - 라. 김포지구 영등포구 회곡동 북동, 내방산동 외방산동 능촌동, 가양동 신월동 각 일부 150만평
 - 마. 영등지구 영등포구 반포동, 능자동, 방배동, 잠원동, 서초동, 양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등포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공고

68 오지구획정리 사업 예정 지구로 책정된 5개 지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공고를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나 관할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통고에 대하여 주지 시킴으로써 보다 통고를 알고자 하니 민선 읍 기하기 바랍.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수신처. 영등포구청장, 상록구청장, 남부, 동부, 서부오지구획정리사업소장

제 4 안

수신 공보심장

발신 과 장

제목 도시계획사업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등포지구획정리사업계획공고

별지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하였으므로 시코 및 서울 뉴-스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등포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공고

1. 68 오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책정된 자락내의 관하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받고 사업 계획을 별지 공고문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였기 통보하며,

2.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법 구획정리법에 미지하여 동법에 공하고 있음을 밝히드립니다.

0008

서울특별시

토지 목록

500	100	20	10	5	2	1
-----	-----	----	----	---	---	---

철부. 공고문 사본 1통. 명

수신처, 별첨 토지 원부의 토지 소유자

0009

건 설 부

건축단자령 432.4 — 19942

1967. 12. 21

수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서울 도시계획 김포, 시흥,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명령

서도구 432.4— 2826 (67. 12. 5)로 신청한 서울도시계획 김포, 시흥,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명함.

1967 년 12월 21일

건 설 부 장 관

다 음

1. 사 업 명 : 가. 서울도시계획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 시흥지구 "
다. " 도봉지구 "
2. 시 행 지 구 : 가. 김포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북동, 등촌동.
회곡동, 공향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각 1부.
나. 시흥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가리봉동,
시흥동, 공천동 각 1부. 영천동
다. 도봉지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각 1부.
3.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다

- | | | |
|---------|---------|------------|
| 4. 시행면적 | 가. 김포지구 | 1,500,000평 |
| | 나. 시흥지구 | 1,500,000평 |
| | 다. 노동지구 | 1,200,000평 |

5. 시행기간 1967년 입가일로부터 1971. 12. 31 까지

6. 기 타 관계도면을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공함것. 끝.

건 실 부 장 관

西紀 1967年 12月 22日 (金曜日) (2版) 【日刊】

서울특별시 서울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공고

1967년 11월 23일 (건설부공고제 146호) 1967년 12월 21일 (건설부공고제 159호) 1967년 12월 15일 (건설부공고제 154호)로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것을 명령한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있어서 비용 부담방법과 토지처분방법및 기타정리상 필요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하기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33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동지구내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의 총합에 공합니다.

196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 계획 별책 사업계획서와같음
 2. 비용 부담 방법 별도 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함
 3. 토지처분방법및 토지 경인, 도봉, 시흥, 김포,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의 정하는바에의함
 4. 사업지구 위치
 - 가. 경인지구 영동포구폭동, 신월동, 신정동, 화곡동 각일부 200만평
 - 나. 도봉지구 성북구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창동 각일부 120만평
 - 다. 시흥지구 영동포구시흥동, 독산동, 가리봉동, 신안양리 각일부 150만평
 - 라. 김포지구 영동포구 화곡동, 목동, 내한산동, 외한산동, 등촌동, 가양동, 신월동 각일부 150만평
 - 마. 영동지구 영동포구 반포동, 동작동, 방배동, 잠원동, 서초동, 양재동, 원지동 각일부 320만평
- 주, 본공고에대한 서류송달은 별도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바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대신함

京
鄉
新
聞